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34
----------	------

발의연월일 : 2025. 3. 18.

발의자 : 문대림 · 임호선 · 이원택

주철현 · 윤준병 · 박용갑

송옥주 · 임오경 · 신정훈

김영호 · 허종식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 · 초지 · 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 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3조제4항 전단 중 “1억 원”을 “2억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 3. (생 략) ② ~ ⑨ (생 략)</p> <p>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생 략)</p> <p>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u>1억원</u>(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p>	<p>-----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p> <p>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2억원</u>- ----- ----- -----. ----- ----- -----.</p>
--	--